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3일, 조은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조은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가. 자동차 판매시 구매자 고지의무에 추가 등

조은희의원안은 자동차 판매시 구동축전지 제조사 및 성능상태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구동축전지 제조사 및 성능상태 등의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김희정의원안 및 조은희의원안 주요내용 >

구 분	개정안 내용	공개 내용
김희정의원안	자동차 판매시 배터리 정보 구매자 고지의무 및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포함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용량, 잔존수명 등
조은희의원안	자동차 판매시 배터리 정보 구매자 고지의무 (미고지시 과태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제품명 및 모델명

개정안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구동축전지의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9. 10 ~ 10. 21)를 진행하고 있고, 개정안들의 내용 중 상당 부

분은 모두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은희의원안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제품명의 경우 제작사가 부여하는 관리번호 등으로 소비자에 공개할 필요가 낮은 측면이 있고, 제조일자의 경우 배터리의 셀, 모듈, 팩의 제조단계별로 상이하며, 동일 배터리 팩 내부에 제조일자가 다른 셀이 탑재되는 경우도 있어 셀 배터리 제조일자까지 기재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조사 측에서 제기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